

2019년 (재)용인시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· 위촉연구원 채용 공고

용인시 정책개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용인시정연구원 개원에 따라 106만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찾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
2019년 6월 7일

용인시정연구원장



1. 모집 분야 및 인원

채용부서	직급	주요 연구분야	인원	자격요건
합 계			9	
자치행정 연구부	초빙 연구위원	문화정책, 문화관광 자치행정	1	박사학위 또는 자격증소지자로서 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
		남북교류, 국제협력 거버넌스	1	
	위촉 연구원	인문사회과학 계열	2	석사 과정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
재정경제 연구부	초빙 연구위원	재정학(지방재정)	1	박사학위 또는 자격증소지자로서 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
	위촉 연구원	상관계열	2	석사 과정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
도시환경 연구부	위촉 연구원	도시계획, 교통계열	2	석사 과정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

※ 채용기간 : 임용일 ~ 2019. 12. 31.(기간제 계약직)

2.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

○ 채용자격기준

- 응시자격 : 「용인시정연구원 인사관리규정」 제21조에 해당하는
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서
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서 남자의 경우
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

※ 적용기준일 : 서류접수 최종일, 위촉연구원의 경우 병역 미필자 응시 가능

【 용인시정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(결격사유) 】

1.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2. 연구원의 징계에 따라 면직조치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
【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】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응시연령 및 거주지 : 제한 없음

○ (분야별 자격요건) ※ 적용기준 : 공고일

- 초빙연구원

-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관련 연구 경력을 가진 자
-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
- 위촉연구원

- 해당분야 석사 과정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
-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
○ (제출서류)

- 초빙연구위원

-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, 연구실적 목록, 연구(직무)수행계획서
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※ 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, 연구(직무)수행계획서, 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

- 학위 논문 및 연구실적 등 증빙자료

- 최종학위 논문, 대표 논문 국문요약서

- 최종학위증명서

- 관련분야 경력증명서(최근 1년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)

-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
-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
※ 모든 서류는 원서접수시 스캔본 제출, 면접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원본 제출
응시원서, 자기소개서, 연구(직무수행계획서), 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

- 위촉연구원

- 응시원서(소정양식)

- 이력서 1부, 자기소개서 1부, 직무수행계획서 1부

※ 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

- 최종학위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(석사과정)
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※ 모든 서류는 원서접수시 스캔본 제출, 면접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원본 제출
응시원서, 자기소개서, 연구(직무수행계획서), 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

3. 시험방법

○ 시험방법 (서류전형 + 면접시험, 필기시험은 시행하지 않음)

- 1차 시험 : 서류전형(5배수 선정)

- 응시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
- 평가항목
 - ▶ 초빙연구위원 : 학력(10점), 연구실적 및 경력(40점), 지원동기(20점), 연구수행계획(30점)
 - ▶ 위촉연구위원 : 학력(10점), 자기소개서(40점), 직무수행계획서(40점)
 - ※ 동점자 발생시 전원 심사 대상으로 선정

- 2차 시험 : 면접시험

● 초빙연구위원

- ▶ 평가항목 : 직원으로서의 자세, 예의, 용인시정에 대한 이해도, 시정연구원에 대한 이해도,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발전성, 주요 활동사항의 연구원 업무활용 가능성, 답변의 논리성 및 상황 대응력,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협조성, 직업에 대한 마음가짐, 지역사회 참여 등 공익활동 (10개 항목)
- ▶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- ▶ 면접시험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
- ▶ 면접위원이 「탁월(10~8점)」, 「우수(7~6점)」, 「보통(5~4점)」, 「미흡(3~2점)」, 「아주미흡(1점)」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정
- ▶ 각 위원의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
- ▶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10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「미흡」 또는 「아주미흡」으로 평정하였거나,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「미흡」 또는 「아주미흡」으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
- ▶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

● 위촉연구원

- ▶ 평가항목 : 직원으로서의 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(5개 항목)
- ▶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토
- ▶ 면접시험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
- ▶ 면접위원이 「상(5점)」, 「중(3점)」, 「하(1점)」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정
- ▶ 각 위원 of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
- ▶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「하」로 평정하였거나,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「하」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
- ▶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

4. 가점사항

○ 취업지원대상자 : 서류전형 및 면접점수 가산

가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서류전형점수와 면접점수 만점의 10% 또는 5%를 가산함

※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,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

※ 서류점수 최종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

5. 채용계획

채용공고	원서접수	서류전형 합격자발표	면접시험	최종합격자 발표
'19.6.7(금)~6.14(금)	'19.6.12(수)~6.14(금)	'19.6.20(목)	'19.6.24(월) ~6.25(화)	'19.6.26(수)

○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hatdory@korea.kr)

- 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※ 공고 확인 : 용인시청 홈페이지(www.yongin.go.kr) 시험정보란
- ※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
- ※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
- 1차 서류전형의 합격기준은 60점 이상이어야 함.
- 1차 서류전형 결과 고득점순으로 채용인원의 5배수를 면접시험 대상자로 선발
- 2차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
- 최종 결과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
 - 초빙연구위원 : ①취업지원대상자 ②면접심사 평정요소 중 “채용분야의 전문성” > “추후 연구 과제 수행능력” > “시 정책개발과의 연계성”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 - 위촉연구위원 : ①취업지원대상자 ②면접심사 평정요소 중 “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” > “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” > “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” > “시정연구원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” > “예의·품행 및 성실성”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-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
-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

6. 기타 사항

○ 보수 및 근무시간

- 보 수 : 초빙연구위원 3,216천원/월, 위촉연구원 2,219천원/월
- 근무시간 : 주40시간(1일 8시간 근무)
- 기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용인시정연구원 복무 규정」을 준수함

○ 채용기간 : 임용일 ~ 2019. 12. 31.(기간제 계약직)

○ 응시자 유의사항

- 입사지원서 접수는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 연구원 서식이 존재하는 제출서류는 한글문서(HWP) 1개 파일로 작성하고, 파일명은 ‘지원분야-응시직급-응시자성명.hwp’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 그 외 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은 pdf파일 1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-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.
-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원서접수일,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됩니다.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 등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

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-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(<http://www.yongin.go.kr>) 시험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채용 시 제출한 서류는 『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.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.
-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정연구원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031-329-5413)